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
시행 전에 기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‘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’이라면
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

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
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
특별법 시행일인 **2025년 10월 23일부터**
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✓ 신청 가능 횟수는 **1회**로,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
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

① 피접종자 주민등록상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


② 이의신청서 및 진료확인서 등
필요한 서류 제출



③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
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
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
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구체적인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
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.

이의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?

신청이 접수되면 **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**합니다.

절차



(신청인)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



(재심위원회) 피해보상 여부 재심의



(질병관리청장) 보상 여부 결정·통보

※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
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**관할 보건소**에서 확인하세요.

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**이의신청**,

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!

2026년 10월 23일까지

